

2021년 4월 2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이종태(044-201-1891), 사무관 김남진(1840) / 제공일: 1월 2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농업인 편의 의자 임차시 이장 등을 통해 일괄신청 가능 [동아일보 4.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의 편의 의자(이하 '쫓그리') 임차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, 임대 후 별도 사후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4월 29일 동아일보 <농민들 편의 의자 '쫓그리'가 농기계라니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### 언론 보도내용

- '쫓그리'는 소모품인데 농기계로 분류돼 임대 계약을 해야 하고 사후 관리까지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,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이장 등 대표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아 임대받을 수 있도록 운영 필요



###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'쫓그리'는 농업인(고령·여성 농업인) 농작업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농작업 편의를 위해, 농기계\*는 아니지만 성격이 유사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.

\*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1] 트랙터, 이앙기, 콤바인 등 40개 기종이 농기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'쫓그리'는 미포함

-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‘임대 방식’(임대계약 체결)을 준용하고 있으나, 1년간 장기 임대(농기계 임대 일수는 통상 1~3일 단기)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 후 별도 사후관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.
  
- 또한, '20년 사업 초기부터 이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해 일괄 신청하고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.